

의안번호	제 661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자	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3월 3일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61
----------	-----

발의연월일 : 2021년 3월 3일
발 의 자 : 이상식, 연종석, 송미애
윤남진, 이상정, 오영탁
황규철

1. 제안이유

- 농어업·농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우수 농어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육성계획수립,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를 둠(안 제9조)

3. 조례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1. 2. 1. ~ 2021. 2. 21. (20일)
-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유기농산과와 협의함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수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 생산성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스마트 농장,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사, 스마트 양식장 등에 통신장비(센서, 제어기 등)와 환경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등으로 시설물의 원격·자동제어가 가능한 농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6.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및 청년농어업인 양성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및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조성,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 기획, 유통, 광고, 회계, 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7.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및 취소·제외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그 상환기간 내에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때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때

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우수농업인 교육기회 제공)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어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기술의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찾아내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다만 본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의 개최 시 청년농어업인단체로부터 2명을 추천받아 심의위원에 포함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관 계 법 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급변하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2. 비용 발생요인

- 스마트농업 육성에 필요한 농어업 분야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 스마트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충청북도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운영
 - ※ 단, 상기 위원회는 조례안 제9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하므로 실제 비용발생은 없음

3. 관련조문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 제6조(지원방법 및 취소·제외 등)
- 제9조(위원회)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 조례안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비는 추계대상에서 제외
- 추계결과 : 1,282억원 (자부담 포함) ※ 비용추계표 참조
- 재원조달방안 : 국비(기금 포함), 국비 융자, 도비, 시군비, 수혜자부담
 - 기존 및 신규(공모 등) 국비사업 유치로 국비(기금, 융자 포함) 조달
 - 도비 및 시군비는 국비 매칭(자체사업은 필요 시 각 지자체 예산에 반영)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44,249	33,333	15,771	15,931	18,891	128,175	
농산분야 보조사업	35,444	24,313	4,351	4,711	5,071	73,890	
축산분야 보조사업	8,805	8,820	8,820	8,820	8,820	44,085	
수산분야 보조사업	-	200	2,600	2,400	5,000	10,200	
재원조달	44,249	33,333	15,771	15,931	18,891	128,175	
의존 재원	소 계	27,408	17,932	7,730	7,737	9,124	69,931
	보조금	21,915	12,396	2,147	2,107	3,447	42,012
	기 금	3,093	3,136	3,183	3,230	3,277	15,919
	융자금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자체 수입	소 계	5,326	4,750	1,981	1,965	1,280	15,303
	보조금	5,326	4,750	1,981	1,965	1,280	15,303
시·군비	8,308	7,309	2,553	2,577	3,670	24,417	
기 타 (자부담 등)	3,207	3,342	3,507	3,652	4,817	18,525	